#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1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 박홍근·김성주·김정호

김경만 • 이상직 • 우원식

신정훈 · 정필모 · 이수진

김승남 · 기동민 · 천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세율 구조는 2013년 당시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따른 것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를 인하한 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현행 과세표준은 저가 주택 매수자에게 부담이 크고, 고가 주택 매수자에게는 부담이 적은 구조이므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2013년 당시와 달리 현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적정 과세가 필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

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시에는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0.8%~3%(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기본세율(4%)을 적용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다주택자 구입을 막기위해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4%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과제도라도 보기 어렵고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이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도록 하여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함
- 나.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 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취득당시가액이"를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8
- 라.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 의 30
- 마.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40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 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0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	<b>.</b>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	8
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	
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	
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	
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	
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신 설>

<u>가</u>. <u>취득당시가액이</u>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생 략)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 0

<u><신 설></u>

<신 설>

가.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8
나.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을
<u> 초과하고</u>
<u>다</u> . (현행 나목과 같음)
<u>&lt;삭 제&gt;</u>

라.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30
 마.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 ②·③ (생 략)
-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

<신 설>

- 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 의 40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 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 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 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 준세율의 100분의 10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